

건설업 벌칙규정

연재순서

1. 벌칙의 종류와 건설산업기본법령상의 벌칙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상의 불이익처분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상의 불이익처분
- 4.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령상의 벌칙 - 이번호**

건설산업 관련 법령수는 무려 80여개에 달하고, 행정처벌 또한 그 내용이 매우 복잡하다. 따라서 실무자들이 법령상의 벌칙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면 경영상의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다. 본지는 기계설비건설업 영위에 필요한 각종 위반 기준 및 처벌 내용을 중심으로 연재한다. [편집자주]

과태료 부과기준 (시행령 제18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과태료의 금액은 제2호의 위반점수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한 위반점수를 제3호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한 경우
- 3) 그 밖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과태료 부과를 위한 위반점수 산정기준

가. 위반점수 산정기준

점수부과 항목	부과 점수				
	1	2	3	4	5
기업규모 (연간매출액)	300억원 미만	300억원 ~ 1,000억원 미만	1,000억원 ~ 5,000억원 미만	5,000억원 ~ 1조원 미만	1조원 이상
위반혐의 금액비율	0.1% 미만	0.1% ~ 1.0% 미만	1.0% ~ 2.0% 미만	2.0% ~ 4.0% 미만	4.0% 이상
위반혐의 건수	1건	2건	3건	4건	5건 이상
과거 3년간 법 조치 유형별 점수	1점 이하	1점 초과 ~ 2점 이하	2점 초과 ~ 3점 이하	3점 초과 ~ 4점 이하	4점 초과

비고 : 위반혐의 금액 및 위반혐의 건수는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 해당 사건을 기준으로 한다.

나. 위반점수 산정방법

- 1) 위반혐의 금액비율은 과태료 부과사건의 하도급대금 대비 법 위반혐의 관련 미지급 금액(신고사건은 신고접수일까지, 직권조사는 직권조사계획 발표일 또는 조사공문 발송일까지, 서면 조사는 조사대상 기간까지 미지급한 금액)의 비율로 산정한다.
 - 가) 법 위반혐의 관련 미지급금액이 있는 하도급거래가 2건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하도급대금과 법 위반혐의 관련 미지급금액 금액을 더하여 산정한다.
 - 나) 법 위반혐의 관련 미지급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위반혐의 금액비율과 관계없이 1점을 부과한다.
- 2) 위반혐의 건수는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해당 조사건의 법 위반혐의가 있는 하도급거래건수를 더하여 산정한다.
- 3) 과거 3년간 법상 조치유형별 점수는 별표 3 제2호가목에 따른 과거 3년간 조치유형별 점수 산정방법에 따른다.

유형	경고 1	경고 2	시정권고	시정명령	과징금	고발
점수	0.25	0.5	1	2	25	3.0

- 경고 1은 서면실태조사에서 발견된 법 위반혐의 사항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자진시정요청에 따른 경우를 말한다.
- 경고 2는 신고 또는 직권인지에 따른 경우를 말한다.

3. 과태료 부과기준

가. 신고 및 직권조사(법 제30조의2제1항제2호) 관련

1)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경우

과태료 금액 = 위반점수/20 × 1억원

2)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임원, 종업원과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경우

과태료 금액 = 위반점수/20 × 1천만원

3) 위반점수가 2점(최하점)인 경우에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과태료 금액은 1천만원,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임원, 종업원과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과태료 금액은 100만원으로 한다.

나.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법 제30조의2제3항) 관련

1) 과태료 부과대상

가) 서면조사표 미제출 업체로서 확인 결과 법 위반혐의가 인정되는 원사업자

나) 서면조사표를 제출하면서 하도급거래가 없다고 응답한 업체로서 확인 결과 법 위반혐의가 인정되는 원사업자

다) 서면조사 결과 위반혐의가 있다고 인정하여 자진시정을 요구한 업체 중 위반혐의를 부인한 업체로서 확인 결과 법 위반혐의가 인정되는 원사업자

2) 과태료 금액 = 위반점수/20 × 500만원[다만, 위반점수가 3점(최하점)인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

